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안 보고



성 북 구
(도시계획과)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안 보고

의안 번호	343
----------	-----

제출년월 : 2024년 10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69조 2항에 따라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약안을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현황 : 서울특별시 7개 기초 자치단체

※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3. 주요내용

- 가. 추진협의회 규약 목적(안 제1조)
- 나.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신설(안 제3조~제6조)
- 다.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신설(안 제7조)
- 라. 협의사항 및 사무처리 등(안 제8조~제1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 (별첨 1)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경원선 구간(용산역~도봉산역, 지선 포함) 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공동 대응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 169조에 따라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협의회의 명칭은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구성) 추진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추진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제5조(조직) ① 추진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협의회의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차기 회장은 임기내 회의에서 호선으로 한다.

④ 회장은 추진협회를 대표하고 회의 소집 및 추진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회장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관계 단체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를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토록 한다.

- ④ 추진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관계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 자문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추진협의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⑤ 협의 안건이 있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회장은 제출된 안건을 실무협의회에 회부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 추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실무협의회는 당해 단체장이 지정하는 관련 실무 과장급으로 구성하고,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③ 실무협의회는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으로 하며, 간사는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실무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협의사항)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 1. 경원선(지선 포함)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중앙정부(국토부 등)와 서울특별시 정책의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
- 3. 철도 지하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
- 4. 그 밖에 추진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무처리) ① 추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 ② 간사는 회의를 주관하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부서의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추진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 제출 요구 등) 추진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등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의결) ① 의결은 위원(회장 포함)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경비부담) 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추진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제14조(규약변경) 규약의 변경은 위원(회장 포함)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보칙)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진협의회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회의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행정협회의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6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이 조,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에서 “행정협의회”라 한다)는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과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회의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별첨 2]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맞게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위한 규약안 신설 건으로 별도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위한 규약안 신설 건으로 별도 비용 발생이 없어 미 첨부

4. 작성자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장 오 달 교